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허4768 등록무효(디)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4. 12. 2017당149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제882657호/ 2016. 8. 18./ 2016. 11. 17.
- 2) 물품의 명칭 : 치마
-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1)

- 1) 선행디자인 1 (갑 제5호증)
 - 가) 디자인등록번호/ 출원일/ 공고일 : 제729437호/ 2013. 8. 6./ 2014. 2. 14.
 - 나) 물품의 명칭 :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 다) 도면: 별지 2의 '가'와 같다.
 - 라) 디자인권자 : 원고
- 2) 선행디자인 2 (갑 제6호증)
 - 가) 출처 : http://C (2016. 4. 14. 공지)
 - 나) 물품의 명칭 :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일명 '와방 속바지')
 - 다) 도면: 별지 2의 '나'와 같다.
- 3)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 가) 출처 : http://D (2016. 7. 3. 공지)
 - 나) 물품의 명칭 : 치마바지
 - 다) 도면: 별지 2의 '다'와 같다.

¹⁾ 선행디자인 1, 2, 3은 각각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3과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4와 5는 심결취 소소송절차에서 선행디자인으로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19호증)

가) 출처 : http://E (2012. 5. 30. 공지)

나) 물품의 명칭 : 치마바지

다) 도면 :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20호증)

가) 출처 : https://F (2013. 6. 11. 공지)

나) 물품의 명칭 : 슈가포인트 아다지오 여성보드숏 치마바지 스타일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거나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1491호로 심리한 다음, 2018. 4. 1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9,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선행디자인 1, 2 중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선행디자인 1, 2 중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용이창작 가능 주장만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 중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이하 '공지형태'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이하 '주지형태'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고, 디자인들의 형태적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요 형태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비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공통점은 바람이나 정전기에 의해 다리 사이의 Y자 형태의 치골 라인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감추어주기 위한 동 일·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속바지의 앞부분에 일정한 형태의 천이 덧대어져 있 는 점이다.

나)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

- (가) 치마의 밑단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밑단이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다.
- (나) 밴드의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밴드의 폭이 넓게 형성 ()되어 있어 시각성이 높아 미감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나,

선행디자인 1은 그 해당하는 부분이 폭이 좁게 형성(어 있어 시각성이 낮아 미감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

(다) 바지 밑단의 구성태양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지 밑단은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장은 치마보다 짧게 형성(체마밑단)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은 그 해당하는 부분인 바지 밑단이 아래로 경사지게 원호형상으로 표현되고, 기장은 치마보다 그 안쪽 부분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착용 상태의 비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차이점

- (가) 치마의 밑단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는 바지 밑단이 수평한 직선의 형상()을 하고 있다.
- (나) 바지 밑단의 구성태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지 밑단은 부지 말로 표현되어 있고, 기장은 치마보다 짧게 형성(치마밀단)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2는 치마 기장이 바지보다 짧고, 치마 밑단이 바지 밑단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표현()되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4, 5의 비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4, 5의 공통점은 속바지 또는 바지의 앞부분에 정면에서 보았을 때 바지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일정한 모양의 천이 덧대어져 있다는 점이다.

나)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차이점

(가) 선행디자인 3이 공지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3은 동일한 형태의 검은색 제품과 하안색 제품이 있고, 디자인 형태를 명확히 대비하기 위해 하얀색 제품도 같이 본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속바지의 앞부분에만 이를 가리는 치마 모양의 사각형 천이 덧대어져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은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 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치마의 형태로 파악되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다) 치마의 밑단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밑단이 아래로 향

하는 완만한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은이와 반대로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 ○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치마의 윗부분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넓은 폭의 밴드형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은 상단 중앙에 금속 제 버튼과 지퍼 형상을 포함하고 있고, 양 옆으로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차이점

- (가) 치마의 밑단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면의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고 바지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형성 ()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는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나) 치마의 전면부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에 넓은 폭의 밴드 형상이 형성되고 전면의 치마는 별다른 구성이나 형태가 포함되지 않은 평이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는 상단에 벨트나 끈을 착용할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고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전면부의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 있도록 재봉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는 '랩 어라운드 스커트 (wrap-around skirt)'2)와 같은 형태의 치마로서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끈으로 연결한 형태의 구성과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 치마의 밑단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면의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하나로 연결된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는 전면의 치마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한쪽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

²⁾ 한 장의 천으로 만든, 몸에 감아 입는 스커트. 옆을 꿰매지 않고 앞이나 뒤로 엇맞추어 입는다. 스코틀랜드의 킬트(kilt)가 이런 유형에 속하는데, 임산부용으로 알맞다(≒랩스커트)(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³⁾ 선행디자인 5의 출처인 'https://F'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1) 선행디자인 1, 2로부터의 용이 창작 여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과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으로부터의 용이 창작 여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지형태인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면의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고 바지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형성()되어 있고, 전면부의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 있도록 재봉되어 치마 부위와 바지 부분이 일체감을 이루도록 나타나게 되나, ①선행디자인 3의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 ○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②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③ 선행디자인 5의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진희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치마

【디자인의 설명】

- 1. 천연직물 또는 합성직물을 재질로 함.
- 2. 본 디자인은 치마로서 바람이나 정전기에 의해 다리 사이의 Y라인을 감춰주며 활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U라인 형태를 갖추었음. 넓은 밴드가 골반과 허리를 감싸주어 편안함을 강조함.
- 3.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1.7은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 4. 참고도 1은 치마를 착용한 상태의 정면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참고도 2는 치마를 착용한 상태의 우측면을 보여주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치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별지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1 (갑 제5호증, 디자인등록 제729437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디자인의 설명】

- 1. 천연직물 또는 합성직물을 재질로 함.
- 2. 본 디자인은 바지 앞면에 치마가 부착되어 있는 속바지로써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있을 경우 바람이나 정전기에 의해 Y자 모양으로 치골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3. 참고도 1은 본 디자인의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를 착용한 상태에 관한 도면임.
 - 4. 참고도 2는 바지 앞면에 치마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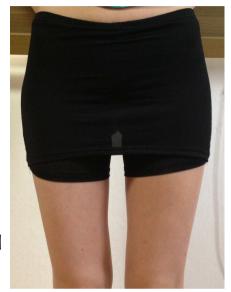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저면도]





[참고도 1]

나. 선행디자인 2 (갑 제6호증)

1) 출처 : http://C (2016. 4. 14. 공지)

2) 물품의 명칭 :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일명 '와방 속바지')

[정면 사진]



[배면 사진]



다.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1) 출처 : http://D (2016. 7. 3. 공지)

2) 물품의 명칭 : 치마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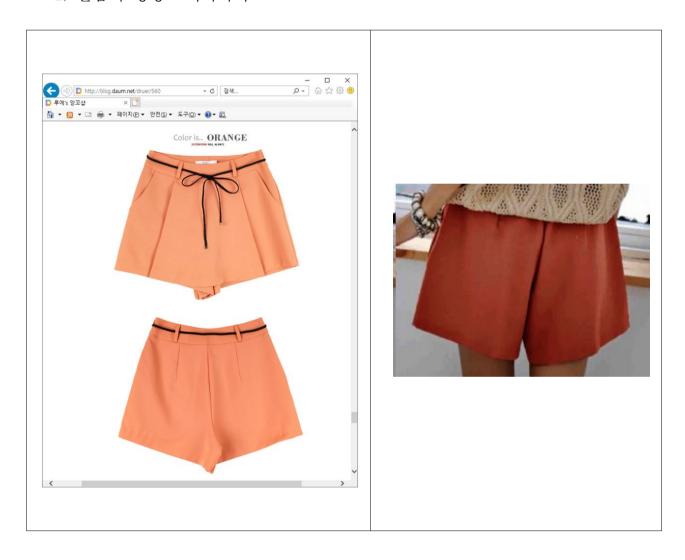




라. 선행디자인 4 (갑 제19호증)

1) 출처 : http://E (2012. 5. 30. 공지)

2) 물품의 명칭 : 치마바지



마. 선행디자인 5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선공지디자인 6)

1) 출처 : https://F (2013. 6. 11. 공지)

2) 물품의 명칭 : 슈가포인트 아다지오 여성보드숏 치마바지 스타일

